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0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성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봉양순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임종국, 임춘대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9명)

1. 제안이유

- 잠실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다수의 경기·공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,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마땅한 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임.
- 이에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의1바목 신설)

나.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의2호사목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: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

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사.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: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: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</u></p> <p>2.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<u>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</u></p>

3. ~ 5. (생략)

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
하는 주민: 100분의 50 범위
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
라 감액

3. ~ 5. (현행과 같음)